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023. 2.

양형위원회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설정 배경
 - 양형위원회에서 심의된 용어 수정, 정의규정 신설, 서술식 기준 추가 등의 양형기준 정비 사항을 전체 범죄군에 통일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수정 경과
 - 2022. 3. 28. 제11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을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3. 2. 13. 제122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
 - 2023. 2. ~ 2023. 3.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개 예정
 - 2022. 4.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II. 용어의 정비

1. 용어의 수정

가. 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2020. 12. 8. 형법 제11조 개정

-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반영함

나. 작량감경 → 정상참작감경

▣ 2020. 12. 8. 형법 제53조 개정

-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반영함

2. 전과 관련 문구 수정

가. 집행유예 전과를 자유형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집행유예 이상’ 이라는 기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반영함
- 예시: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전과(10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동종 전과(10년 이내의, <u>금고형의</u> 집행유예 이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2회 이상 <u>금고형의</u>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u>금고형의</u>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

나. 벌금형 집행유예 반영

- 동종 전과의 범위와 관련하여 벌금형 전과의 범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반영함

다. 벌금형 전과의 기산점

- 전과의 기간 계산 규정에 벌금형 전과도 포함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동종 전과의 범위에 벌금형 전과가 포함된 범죄에 반영

III. 서술식 기준 및 정의규정

1. 심신미약 서술식 기준

-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일정한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식 기준을 정함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이 문제될 수 있는 범죄군에 위 서술식 기준을 통일적으로 반영

2. 정의규정 수정 및 추가

가. 진지한 반성

▣ 위증·증거인멸범죄 중 위증, 무고범죄

● 현행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정안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외 정의규정이 없는 범죄에 아래 정의규정 추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정의규정이 없는 범죄에 아래 정의규정 추가

●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집행유예 기준 정비

▣ ‘피고인이 고령’ 삭제

-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사정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
- ‘피고인이 고령’ 이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남아 있는 범죄군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이를 모두 삭제함

4. 명백한 이탈자, 띄어쓰기 오기 등 수정

끝.